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04년 5월 19일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2. 위원회 회부

☐ 회부일자 : 2004년 5월 20일

☐ 상정일자 : 2004년 5월 27일

<제1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3. 개정사유

☐ 문화재 보호법과 서울특별시문화재조례 및 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 관한조례가 개정되어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 우리구 관내 문화재에 대한 구세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인사동 문화지구 내 문화권장시설 등에 대해서도 구세감면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 ☐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종전 주거용에 한하던 것을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함(안 제7조)
- ☐ 인사동 문화지구 내 문화권장시설 중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안 제7조의 3)

5. 검토의견

- ☐ 본 조례 개정안은 2003년 11월 제137회 정례회의에 상정되었다가 부결되었던 안으로서 당시 부결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재인 경우 용도와 관계없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모두 감면해줄 경우에는 타구에 비해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구 입장에서 볼 때 구 재정감소에 대한 보전대책없이 이를 전면 수용하기가 어렵고 또한 상업용 문화재까지 감면해택을 주게 되면 주거용 문화재를 소유한 사람들까지도 이를 상업용으로 이용하려할 것이고 이럴 경우 많은 사람들로 인해 문화재의 훼손이 심해 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시킨 사안임
- ☐ 그러나, 본 감면 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안이 시달된 것으로서 구재정감소에 따른 보전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라는 명분으로 우리구에서 이의 시행을 계속 보류하였을 경우에는 집행부의 입장과 반대로 납세의무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타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시비와 함께 이들의 지방세 납부 저항과 불만을 우리구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상정한 것으로 사료됨
- ☐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제137회 정례회의시 부결되었던 사안을 재상정한 것으로서 이제까지는 문화재 중에서 주거용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

었으나 앞으로는 주거용 외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주거용과 동일하게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우리구 감면조례 제7조의 제3호에 의하면 문화재 보호법과 서울시에서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이미 용도에 관계없이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으로 추가로 감면대상이 되는 문화재는 문화재보호구역외의 상업용 문화재에 국한되기 때문에 감면되는 구세는 연간 모두 6건에 약 4천6백여만원으로 추계됨

- 신설된 안 제7조의3의 내용은 우리구의 인사동문화지구내에 대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인한 골동품, 화랑, 표구, 필방, 지업사, 공예품점 등 권장시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또한 인사동 문화지구 내 문화권장 시설 등에 대해서도 시세에 이어 구세까지 감면해줌으로써 문화재 보존 및 계승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인사동 문화지구 내 감면조항 신설로 인하여 감면되는 구세는 집행부 추계에 의하면 연간 3천1백만원으로 추계되고 있음

-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상업용 문화재와 인사동 문화지구의 감면대상 확대로 줄어드는 구세는 연간 7천7백여만원이며 여기에다 이제까지 주거용 문화재로 지정되어 기존의 감면되고 있는 7천5십만원을 합하면 연간 1억 5천여만원의 구세가 문화재 지정으로 인하여 감면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러나 문화재나 문화지구를 보존·육성·개발 등은 훌륭한 관광자원으로서 이러한 관광자원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 나아가 국가전체가 수혜를 보는 것이므로 우리구에서 감면되는 구세를 일부 재원으로하여 이를 보존, 육성하는 것 또한 우리구의 입장으로 볼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 ☐ 따라서 문화재를 소유한 납세의무자들의 조세저항과 불만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이 불가피하게 가결된다 하더라도 우리구의 비과세 면적이 66.7% 달하고 재정자립도 또한 70% 내외를 점하고 있는 것을 감안 앞으로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조정 시에는 문화재 지정 등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산정항목에 추가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6. 관련법규

☐ 문화재 보호법

○제8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 ①문화재청장은 제4조·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3조(지정문화재)

①시장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다.

1. 유형문화재 :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유형문화재중 중요한 것
2. 무형문화재 :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무형문화재중 중요한 것
3. 기념물 :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기념물중 중요한 것
4. 민속자료 :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민속자료중 중요한 것

□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

○ 제5조(문화지구의 지원)

① 시장·구청장은 문화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권장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2.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권장시설의 신축·개축 또는 대수선비의 용자
3. 권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비 및 운영비의 용자
4. 기타 문화지구 안의 환경개선,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상품개발,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문화지구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안